

동두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 1. 15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 1. 15

다. 상정일자 : 제1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시민단체 및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보완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준칙안을 마련·시달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우리시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정함.
-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운영 및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를 정함.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
-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에 대하여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시·군에 시달한 준칙안에 의하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 보완을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서 판단됨.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지역주민이 다함께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하여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편의 및 복지증진과 자치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기능역할 등 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비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자치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게 운

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적으로 지난번 간담회의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위원회 참석수당, 강사로 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별도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마련 각동에 시달할 계획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반대토론 : 김택기 의원)

동두천시 주민자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기능,임기 등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나 제17조 제1항에서 당연직 고문은 “시의회 의원만”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제17조 제7항에서 중복하여 “당연직”이 아닌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미전달이 미흡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함.

제17조 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으로 수정코자 함.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제 출 안	수 정 안
제1조 ~ 제16조(생략)	제1조 ~ 제16조(제출안과 같음)
제17조① ~ ⑥(생략)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제17조① ~ ⑥(제출안과 같음)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 제24조(생략)	제18조 ~ 제24조(제출안과 같음)
부 칙 (생 략)	부 칙 (제출안과 같음)